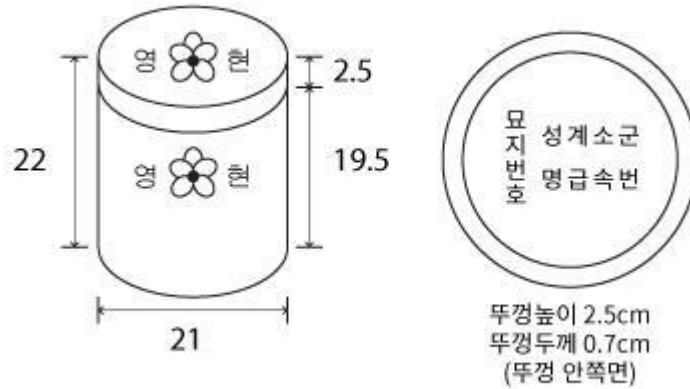


유골함 규격 및 제작 방법 (제7조 관련)

1.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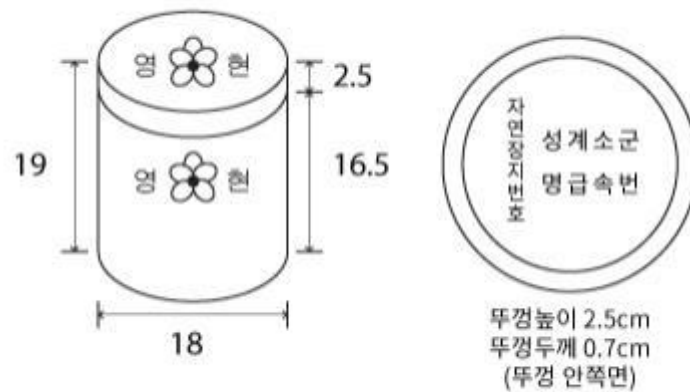


가. 매장용 유골함은 자기,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의 유골함으로 한정한다.

나.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 무궁화를 새기고, "영현"이라고 표시하되, 안치용 유골함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다. 유골함의 뚜껑 이면에는 성명, 신분(계급), 소속, 군번, 묘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적는다.

2. 매장용 및 자연장용 유골함



가. 매장용 유골함은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의 유골함으로 한정한다.

나.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 무궁화를 새기고, "영현"이라고 표시한다.

다. 유골함의 뚜껑 이면에는 성명, 신분(계급), 소속, 군번, 자연장지번호를 적는다.